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대가의 임의 감액 금지 등〉

■ 이철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175호)

2024.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대가의 임의 감액 금지	2
2.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 및 대행에 대한 표준계약서 작성·활용	6
※ 참고자료	11
1. 2023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11
2. 2024년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수수료(한국전기안전공사) 및 대행 대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1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철규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4. 7. 24.
3. 회 부 일 : 2024. 7.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라고 함)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대행사업자(이하 “전기안전관리사업자”라고 함)간 전기안전관리용역 계약 시 표준계약서 활용 의무 근거 규정이 없어 공정한 계약을 통한 건전한 시장 조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전기안전관리사업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대가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대가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사업자와 전기안전관리용역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소유자가 이러한 대가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도록 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 관련 건전한 시장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3조).

Ⅲ. 검토의견

1.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대가의 임의 감액 금지

개정안은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가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대행시킬 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업무 대행의 대가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7항 후단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 ⑥ (생략)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후단 신설>	⑦ ----- ----- ----- ----- ----- ----- ----- ----- --.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다.

현행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하기 위하여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각각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¹⁾함.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의 대가를 공정하게 산정할 수 있는 계약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7항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²⁾에 따라 산업

1)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안전공사는 격지, 오지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대행할 수 있다.

1. 안전공사
2. 자본금,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3.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①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³⁾⁴⁾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함.

현재,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차년도에 적용할 직접인건비 등을 산출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의 평균임금을 매년 말에 공표⁵⁾하고 있고,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이를 적용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 대가⁶⁾를 정하고 회원사에 매년 안내 중임.

[표] 실비정액가산방식 주요 내용

구 분	주요내용
직접인건비	○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투입된 인원수 × 기술등급별 노임단가)
직접경비	○ 업무수행 경비(여비, 특수자료비, 인쇄비, 측량비, 조사비 등)
제경비	○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불포함되는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 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
기술료	○ 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40%로 계산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대가)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4)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 7. (생략)

5) 2023년 말에 공표한 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결과는 [참고자료 1] 참조

6) 2024년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한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및 협회가 정한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대가는 [참고자료 2] 참조

다만, 협회가 산정한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의 대가는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고, 전기사업자·소유자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사업자 등이 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에 대한 대가를 계약으로 정할 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행 법률에 따라 협회에서 산정한 대가를 소유자가 임의로 감액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계약 과정에서 영세한 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부당하게 감액당하는 상황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협회가 산정한 대가는 소유자가 업체를 선정하고 대가를 결정할 때 참고할 뿐, 실제 대가는 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사업자 간의 계약조건, 경쟁 등을 반영한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법률로 임의 감액을 금지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임.

2.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 및 대행에 대한 표준계약서 작성·활용

개정안은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전력기술인단체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급·활용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9항 신설 및 제23조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①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① ----- ----- ----- ----- -----전 력기술인단체에-----.

현 행	개 정 안
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략)	-----.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 법률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대행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대행업무의 범위, 업무량 및 최소점검횟수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위탁·대행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⁷⁾).

이에,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전력기술인단체로 하여금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 계약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급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시장에 공정한 계약 질서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면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

7)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 및 직무와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업무량 및 최소점검횟수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약 관련 비용을 최소화하고 일부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을 보임.

참고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동물보호법」,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 여러 입법례에서 특정 분야의 표준계약서 작성 및 보급·활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표] 표준계약서 작성 및 보급·활용에 관한 규정을 둔 입법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 또는 서로 다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1조(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보호 및 동물영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영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표준계약서의 보급 등) 문화재청장은 매장유산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8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스포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프로스포츠단에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프로스포츠단에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 이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8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저작물 등의 창작·편집 또는 간행물의 발행·판매 등 출판 관련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고,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458

[참고자료 1] 2023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227호(2023.12.6.)

2023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본 협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372001호) 결과를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단위 : 원, 1인 1일 기준)

구분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기술사	452,862	441,283	434,967	446,055	437,681	548,952	418,418
특급기술자	385,299	340,456	322,529	346,855	334,840	450,681	340,360
고급기술자	319,838	289,628	290,679	293,799	303,255	361,873	290,356
중급기술자	276,064	278,902	263,793	272,915	257,066	341,730	239,233
초급기술자	235,927	232,198	226,926	213,496	223,960	279,477	211,513
고급숙련기술자	273,579	275,155	243,388	252,328	248,354	334,945	267,012
중급숙련기술자	211,582	220,203	210,987	238,259	213,962	319,831	212,228
초급숙련기술자	192,737	188,567	181,810	194,029	187,715	207,282	174,216

- 상기 제시된 임금은 1일 평균임금 (만근한 기술자 월 인건비(원) ÷ 1개월 평균 근무일수(일))

- '22년부터 엔지니어링 활동분류별 기술자 평균임금 미공표

* 엔지니어링 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별표1에 따름

** 기타 : 엔지니어링 기술부문 중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산업, 해양·수산 해당(보고서 참조)

○ 월평균 근무일수 : 20.6일

○ 적용일 : 2024년 1월 1일 부터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임금통계작성기관 (국가승인통계 제372001호)]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참고자료 2] 2024년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수수료(한국전기안전공사) 및 대행 대가(한국전기기술인협회)

(단위:원 /VAT 포함)

구분		안전공사 수수료	기술인협회 안내 대행 대가*
저압	50kW 이하	101,750	145,483
	~ 100kW 이하	116,270	163,094
	~ 200kW 이하	134,310	183,768
	~ 300kW 이하	154,550	196,785
	~ 400kW 이하	236,280	341,502
	400kW 초과	283,470	359,114
고압 및 특 고 압	100kW 이하	142,120	241,961
	~ 200kW 이하	178,640	267,995
	~ 300kW 이하	198,660	284,075
	~ 400kW 이하	288,420	454,060
	~ 500kW 이하	341,220	472,438
	~ 600kW 이하	459,910	656,206
	~ 700kW 이하	580,250	673,051
	~ 800kW 이하	700,920	866,008
	~ 900kW 이하	870,210	885,916
	~ 1,000kW 이하	1,009,470	1,303,224
	~ 1,250kW 이하	1,308,780	1,362,183
	~ 1,500kW 이하	1,584,000	1,584,000
	~ 2,000kW 이하	2,168,980	2,168,980
	~ 2,500kW 이하	2,892,010	2,892,010
	~ 3,500kW 이하	3,300,000	3,300,000
	~ 4,500kW 이하	3,960,000	3,960,000

* 전기기술인협회 대행 대가는 중급기술자의 직접인건비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